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일 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6”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96”을 “97”로 하고, 운전서기보 “3”을 “4”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7의5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8”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68”을 “6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6”을 “57”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며, “ 3급 또는 4급 이하 1.0”을 삭제한다.

별표 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통일부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및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부분을 삭제하고, 통일부 소속기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 부분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4 제2호 및 별표 7의5 제2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 상 조직(제24조제1항 관련) 1. 통일부 <table><tr><th>조직</th><th>정원</th><th>평가기간</th></tr><tr><td>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td><td>2명 (5급 2명)</td><td>2021년 9월 30일까지</td></tr><tr><td>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td><td>2명 (4급 1명, 5급 1명)</td><td>2021년 9월 30일까지</td></tr></table>	조직	정원	평가기간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2명 (5급 2명)	2021년 9월 30일까지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 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 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 영할 수 있다. [별표 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 상 조직(제24조제1항 관련) 1. 통일부 <table><tr><th>조직</th><th>정원</th><th>평가기간</th></tr><tr><td colspan="3"><삭제></td></tr><tr><td colspan="3"><삭제></td></tr></table>	조직	정원	평가기간	<삭제>			<삭제>		
조직	정원	평가기간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2명 (5급 2명)	2021년 9월 30일까지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조직	정원	평가기간																	
<삭제>																			
<삭제>																			

교류협력실장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교류협력실장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운영과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운영과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과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과	0명	2022년 9월 30일까지
2. 통일부 소속기관			<u><삭제></u>		
조직	정원	평가기간			
북한인권기록 센터 기획연 구과	3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북한인권기록 센터 조사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1년 9월 30일까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u>	<u>96</u>	<u><삭 제></u>	-96
일반직 계	<u>96</u>	<u>97</u>	+1
·	·	·	
·	·	·	
운전서기보	<u>3</u>	<u>4</u>	+1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u>	<u><삭 제></u>	-1.0
일반직 계	<u>1.0</u>	<u><삭 제></u>	-1.0
운전서기보	<u>1.0</u>	<u><삭 제></u>	-1.0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5]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은 제외한다)</u>	<u>68</u>	<u><삭 제></u>	-68
일반직 계	<u>68</u>	<u>69</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6</u>	<u>57</u>	+1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u>3급 또는 4급 이하</u>	<u>1.0</u>	<u><삭 제></u>	-1.0